

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경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2. 11. 18.

발의의원 : 전경원, 권기훈,
박소영, 박종필,
손한국, 이성오,
이영애, 이재숙,
정일균, 하병문
의원(10명)

1. 제안 이유

우리사회의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,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유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에 감염병을 추가함(안 제4조)
- 나.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,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신설함(안 제6조)
- 다.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체험·훈련·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8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”을 “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,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”으로 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교육공동체”를 “감염병, 교육공동체”로 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교육감은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 및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,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안전교육은”을 “안전교육은 이론교육과”로 하고, “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”를 “체험·훈련·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 제목 “(교육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교육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교육안전자문위원회”를 “교육안전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<u>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,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</u>----- -----.</p>
<p>제4조(교육안전의 범위) 이 조례에서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보건안전 : 교육기관의 보건 및 환경위생, <u>교육공동체</u> 구성원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</p> <p>6. ~ 8. (생략)</p>	<p>제4조(교육안전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<u>감염병, 교육공동체</u> ----- ----- 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교육감은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 및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,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안전교육의 실시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안전교육은</u>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<u>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안전교육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안전교육은 이론교육과</u> ----- ----- ---- <u>체험·훈련·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</u> 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1조(<u>교육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</u>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<u>교육안전자문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11조(<u>교육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</u>)</p> <p>----- ----- ----- <u>교육안전위원회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(붙임)

관 계 법 령

□ 교육기본법

제17조의5(안전사고 예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) ① 교육부장관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. 이하 같다)의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, 학교장 및 「사립학교법」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자(이하 “학교장등”이라 한다)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·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·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(학교안전교육의 실시)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(이하 “안전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,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
2.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
3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
4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
6.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

② 삭제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1.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

2.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,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